

서울특별시 마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의안 번호	18 - 70
----------	---------

제출연월일 : 2018년 8월 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정이유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5291호, 2017.12.26.공포, 2018.1.1.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개정된 법령에,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향상과 편익증진을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함에 따라”

납세자보호관 선발기준·업무처리 방법 및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용어 정의, 법령 등과의 관계를 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나. 납세자보호관의 배치, 선발기준, 업무, 권한을 정함(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 다. 납세자보호업무의 심의를 정함(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
- 라. 고충민원의 대상, 신청 및 처리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부터 제19조까지)
- 마. 세무조사기간 연장·연기신청 및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 바. 권리보호요청 처리원칙, 대상, 처리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 사. 납세자권리헌장 제·개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9조부터 제30조까지)
- 아. 지방세 제도개선 과제 발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77조,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51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불임)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규제여부 : 해당사항 없음

마.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2018. 7. 26. ~ 8. 15. (20일간)

2)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

3)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의결 (2018.8.21.)

5) 서울특별시 마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1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 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무부서"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세무부서장"이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고충민원"이란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4. "납세자보호관"이란 「지방세기본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권리보호요청"이란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조사 및 일반 지방세 행정 진행 과정에서 지방세 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

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권리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세무대리인)가 관할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② 제1항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및 지방세관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납세자 권리보호업무에 관하여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납세자보호관

제4조(납세자보호관의 배치)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납세자보호관을 세무부서 외의 부서에 둔다.

- ② 구청장은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자를 둘 수 있다.

제5조(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 ① 구청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구비한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한다. 다만, 인력 수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완화하여 적

용할 수 있다.

1. 직급기준: 6급

2. 경력기준: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서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③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 이상의 징계요구 중인 사람 또는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아 특별사면·일반사면을 받지 않았거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 승진임용의 제한에 따른 일정기간 내에 있는 사람은 임명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적극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직무상 과실로 부득이하게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법 제77조제2항 및 영 제51조의2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 상담
2.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3. 납세자권리현장의 준수 등에 관한 사항
4.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제7조(납세자보호관의 권한)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6조에서 규정하는 업무

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2.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요구 및 중지요구

3. 위법·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요구

4.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요구

5.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 및 질문·조사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한을 세무부서장에게 행사한다.

제3장 납세자보호 업무의 심의

제8조(안전 심의 등) ① 고충민원 등 심의는 법 제147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안전을 심의한다.

1. 고충민원 등에 대하여 세무부서와 이견이 있는 경우로서 100만원 초과인 안전

2. 그 밖에 납세자보호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8조제2항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운영은 법·령에 따른다.

제4장 고충민원

제10조(고충민원 처리준칙)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지방세 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자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고충민원의 대상) 고충민원의 대상은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와 관련된 모든 고충이 그 대상이다.

제12조(고충민원의 대상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충민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본안 심리를 거치지 아니한 각하결정 등은 고충민원의 대상에 포함한다.

1. 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2. 법, 「감사원법」, 「행정소송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3. 감사원장, 행정안전부장관, 자체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
4. 탈세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5. 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
6. 법 등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7. 「민사소송법」 등 법률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한 경우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대상에서 제외됨을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고충민원의 분류) 납세자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을 처리한다.

1. 구청장이 결정·처분한 사안인 경우
2. 구청장의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안인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고충민원의 신청기간) ①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지방세 부과·징수의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할 수 있다.

② 고충민원의 대상이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 있어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5년) 종료일 9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